

#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3
----------	------

발의연월일 : 2022. 11. 10.

발 의 자 : 이명녀, 강혜순, 박경흠,  
문기호, 안영호, 문희성,  
김도운, 김태욱, 정재환,  
홍영진

## 1. 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 교육 및 홍보(안 제5조 ~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마.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2. 11. 2. ~ 11. 9.(7일간)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3. 작성자

- 소 속: 가족복지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김동호
- 연락처: 290-4904